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·사용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고양시

내 용

고양시에서는 2009. 9월부터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‘고양시공유임야특별회계’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 세입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

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설치된 「고양시공유임야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」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유림 매수 및 교환,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설치비,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, 그 밖에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로만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,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위 특별회계로부터 자금

을 전입 받아 위 특별회계가 정하고 있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위 특별회계가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 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게 수목원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수목원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는 약 215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를 산출하였다.

그러나, 2011년~2012년 회계연도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동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본설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세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년 결산잉여금으로 누적 관리만 해 왔다.

결국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. 12. 4. 공유임야 특별회계 10,490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위 특별회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.

조치할 사항 고양시장은

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특별회계 자금을 고양시공유임야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⁷⁾토록 하시고, 앞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목적사업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7) 2016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에 4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으로 예산 반영